

####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원하시는 정보를 클릭하세요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91조관련\)](#)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고성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비 20미터이상의 개설된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의 유스호스텔은 제외)

바.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사.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공장중 아파트형공장,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필름현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아목의 (1)내지(6)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창고시설(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차.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파. 공공용시설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마. 교육연구및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고성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비 20미터이상의 개설된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 라.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마. 교육연구및복지시설(연구소 및 생활권수련시설의 유스호스텔은 제외)
- 바. 운동시설
- 사.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및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별표 3 제8호 공장
- 자.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너비 10미터이상의 개설된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함
- 카. 자동차관련시설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타. 동물 및 식품관련시설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위시설과 유사한 것(동, 식물원제외)
- 파. 공공용시설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단독주택
  - 나. 공동주택
  - 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 라.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마.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 바.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아. 운동시설
2. 고성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판매 및 영업시설
- 라.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마. 업무시설
- 바.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창고시설
-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액화석유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너비 10미터 이상의 개설된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함
- 자.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하고 정비공장은 부분정비업과 소형정비업에 한함)
- 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카. 공공용시설
- 타.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판매 및 영업시설
  - 마. 의료시설
  - 바. 업무시설
  - 사.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
  - 자.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
  - 차. 창고시설

- 카. 공공용시설(교도소 및 감화원을 제외한다)
- 2. 고성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단독주택(다른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한다)
  - 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바닥면적의 합계의 100분의 70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라. 운동시설
  - 마. 숙박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함)
  - 바. 위락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 사. 공장으로서 영 별표4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는 제외)
  - 자.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위시설과 유사한 것(동, 식물원제외)
  - 카. 관공휴게시설

###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12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다.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라. 공장

- 마. 창고시설
  - 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사. 자동차관련시설
  - 아.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고성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단독주택
  - 나. 공동주택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함)
  - 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및 전시장
  - 마. 의료시설
  - 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및 가축시설중 가축용 운동시설, 가축용 창고를 제외한다)
  - 아.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 **생산농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과 초등학교
  - 라. 운동시설중 운동장
  - 마.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
  - 아. 공공용시설
2. 고성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단란주점을 제외)
  - 다.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및 전시장에 해당하는 것
  - 라.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마. 의료시설

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영 별표 16 제2호 아목의 (1)내지(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창고시설

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사목(운전학원, 정비학원) 및 아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에 해당하는 것

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다목(도축장) 및 라목(도계장)에 해당하는 것

파.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묘지관련시설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라.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바. 운동시설
  - 사.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공공용시설
  - 카. 묘지관련시설
  - 타. 관광휴게시설
2. 고성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함.)
    -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마.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사.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함)



- 아. 공장중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써 영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자. 창고시설
- 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카.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중 종합정비업은 제외)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 다.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학교) 및 나목(교육원)과 바목(도서관), 사목(아동관련시설), 아목(생활권수련시설), 자목(자연권수련시설)에 해당하는 것
- 마. 운동시설중 운동장
- 바. 공장중 별표 20 제2호 차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채지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 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 사.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차. 공공용시설

2. 고성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경우 규칙 별표 제2호에 의한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 가.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 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 라.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바.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직업훈련소), 라목(학원), 마목(연구소)에 해당하는 것
- 아.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자.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차. 별표 18 제7호 사목 및 별표 19 제10호 공장
- 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유독물보관, 저장시설은 제외)
- 파. 자동차관련시설
- 하. 묘지관련시설
- 거. 관광휴게시설

####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2. 고성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에 있어 당해 토지 또는 인근 토지보다 1미터 이상 절토, 성토할 수 없으며,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개발하여야 하고 우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것에 한한다.)
  - 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다.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중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유사한것(동, 식물원 제외)
- 마.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 바. 묘지관련시설

###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91조관련)

1.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 가.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 나. 농산물·임산물·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 다.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 가. 단독주택중 농어가주택
  - 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 (1)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농원지역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 라.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종교집회장)·마목(박물관·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을 제외한다) 및 바목(동물원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것

- 마. 의료시설
  - 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원·도서관·아동  
관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 사. 운동시설
  - 아.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  
촌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농원지역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자. 창고시설(농업용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 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의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  
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수시설 규모 이하인 것  
에 한한다)
  - 카. 묘지관련시설중 납골당(문화및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묘  
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타.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및 휴게소
  - 파.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1) 문화재관리용 또는 해양홍보·교육을 위한 시설
    - (2) 「습지보전법」 제12조에 의한 습지보전시설
    - (3)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의 공동구관장·하치장 및 창고
    - (5) 사회복지시설
    - (6) 환경오염방지시설
3. 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가. 산림법에 의한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 나. 문화재의 복원
  - 다.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라. 토지의 합병 및 분할
  - 마.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적조방지, 어장정화 및 농업에의 사용 등을  
위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
  - 바.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 투  
기장의 조성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

## 물의 채광

- 사.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수산업을 위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아.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도로구역·접도구역 또는 하천구역안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 자. 통신선로설비·안테나·전주·열공급시설·송유시설·수도공급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 차.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 등 당해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 카.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